

의안번호	2218422
의 퇴 인	김정호 의원
회 답 일	2026. 6. 24.
추계번호	26C2247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고독사 발생 현장 오염폐기물 처리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, 고독사 실태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수행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경우,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억 3,800만원(연평균 8,800만원) 이상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고독사 발생 현장 오염폐기물 처리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 (안 제4조)	50	0	0	0	0	50	10
고독사 실태조사 범위 확대 및 수행 주기 단축(안 제10조)	99	0	0	289	0	388	78
합 계	149	0	0	299	0	438	8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제3항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발생 현장의 오염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6조 (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의 수립 등)	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사회적 고립·은둔의 예방에 관한 내용을 추가	의무규정
3	안 제10조 (사회적 고립·은둔 및 고독사 실태조사)	현행 고독사 실태조사를 사회적 고립·은둔 및 고독사 실태조사로 확대하고, 수행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	의무규정
4	안 제12조의2 (고독사위기대응 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	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체 조사·발굴 결과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함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5	안 제16조 (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·교육)	노인복지시설, 사회복지시설, 공공기관, 병원급 의료기관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, 학교 등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·교육의 표준 가 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16조의2 (고독사 사후 수습 지원)	(제1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회복과 오염폐기물 처리 및 유품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(제2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조 (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) 제3항	○	○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2	안 제6조 (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의 수립 등)	×	○ 가장 최근 수립된 「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」에서도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, 고립·은둔 청년 발굴 · 지원 체계 마련 등 사회적 고립·은둔 예방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 상됨
3	안 제10조 (사회적 고립·은둔 및 고독사 실태조사)	○	○ 기존 사업비를 고려하여 추계
4	안 제12조의2 (고독사위기대응 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	×	○ 안 제12조의2제1항은 연계 대상 정부의 범위·항목·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 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계할 정보의 종류와 규 모 등을 알 수 없음
5	안 제16조 (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·교육)	×	○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 상담·교육 실시 의무가 있는 기관 중 국공립 기관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·배포할 경우, 그 방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 점에서는 해당 기관이 선택할 제작·배포방식을 알 수 없음
6	안 제16조의2 (고독사 사후 수습 지원)	×	○ 안 제16조의2제3항은 지원의 대상·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지원의 구체 적인 내용과 대상자 등을 알 수 없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고독사 발생 현장 오염폐기물 처리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·시행(안 제4조)

- 개정안에 따라 고독사 발생 현장의 오염폐기물 처리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개정안 시행 첫 해에 해당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, 환경부가 실시한 유사 연구용역 단가를 준용하여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
 - 환경부는 2018년 「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 연구」 용역을 실시하는데 5천만원을 지출함
 - 환경부가 실시한 유사 연구용역 단가가 추계기간 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결과, 고독사 발생 현장 오염폐기물 처리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 시, 개정안 시행 첫해인 2027년에 5천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2] 고독사 발생 현장 오염폐기물 처리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
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고독사 발생 현장 오염폐기물 처리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 (안 제4조)	50	0	0	0	0	50	1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고독사 실태조사 범위 확대 및 시행 주기 단축(안 제10조)

- 개정안에 따라 고독사 실태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, 수행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확대될 조사 범위와 관련된 유사 연구용역 사례 및 최근 고독사 실태조사 소요비용 단가를 준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 -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 수행을 위해 2022년 1.9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지출하였고, 별도로 2023년 「고립·은둔 청년 실태조사 연구」 용역에 9,9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지출함
 - 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상기 두 연구용역비의 합계만큼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고,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 - 가장 최근 실태조사가 2022년에 수행되었으므로, 현행법 유지 시 다음 실태조사는 2027년 수행될 것으로 예상됨
- 추계결과, 고독사 실태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행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할 경우,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3억 8,800만원(연평균 7,800만원)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3] 고독사 실태조사 범위 확대 및 수행 주기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현행 유지(5년 주기, A)	190	0	0	0	0	190	38
개정안 시행 (범위 확대 및 3년 주기, B)	289	0	0	289	0	578	116
추가재정소요(B - A)	99	0	0	289	0	388	7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-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(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제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